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**임원선거관리규정**

2020. 11.



목 차

제1장 총	칙
•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제2장 선거	관리위원회 ······
제4조(선거 제5조(선거 제6조(선거 제7조(선거	관리위원회의 설치)
제3장 후보	L자 등·····
제10조(후	보 자격)보 자격)보 자격)보자 등록)보자 등록)보자 등록)보자 등록)보자 등록)보자 등록 (기계 기계 기
제4장 선거	관리 및 투·개표 ·····
제13조(선 제14조(투 제15조(투 제16조(무 제17조(개	거 운동)
제5장 보칙	
제20조(투 제21조(유 제22조(법	립총회에서의 선거) 표지 보관) 권해석 등) 령의 변경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관련법규 및 협회정관에 따라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의 임원(협회장, 이사, 감사)을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[적용범위]

협회의 임원 선거는 협회정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.

제2장 선거관리위원회

제3조(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)

본 규정에 따른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

제4조(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)

-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선거관리위원은 회원 중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, 선거관리위원 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단, 선거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지원을 위해 협회사 무국에서 1인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협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구청장 또는 협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협회회원사가 아닌 자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.
- ④ 임원 및 임원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⑤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선거업무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.

제5조(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)

- ①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선거관리위원장 1인을 둔다.
-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, 선거에 따른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- ④ 선거관리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는 등의 사유로 결위된 경우에는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회의 추천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추천을 받아 협회 선거 관리위원회의 의결로서 즉시 보결 선임하여야 한다.

제6조(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)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.

- 1. 선거에 관한 안내 및 공고
- 2. 선거인명부 작성 및 투표자 신원 확인
- 3. 입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사

- 4.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
- 5. 투표 및 개표관리
- 6. 투표지의 유·무효 심사 및 판정
- 7. 기호 배정 관리
- 8. 당선자 공포·공고
- 9. 선거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, 심사 및 판정
- 10. 선거운동의 방법 및 감독
- 11. 기타 선거에 관련된 사항

제7조(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)

-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의 집행, 관리를 위한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② 선거관리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 선거관리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대표자가 직접 회의를 소 집할 수 있다.
- ③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선거사무의 협조)

- ①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② 협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위하여 사용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
- ③ 협회는 선거관리위원의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장 후보자 등

제9조(입후보 자격)

- ① 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피 선출일 현재 회원에 한한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.
 - 1.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
 - 2.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- 3.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
 -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 - 4.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
제10조(후보자 등록)

- ①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을 협회 사무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,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회원에게 일반우편,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.
 - 1. 후보자등록 기간
 - 2. 등록 장소
 - 3. 선출해야 할 임원의 수
 - 4. 등록 시 제출서류
 - 5. 후보자등록 요건
 - 6. 그밖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사항
- ② 입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정 양식의 입후보등록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입후보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것을 입후보의 요건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11조(기호배정 및 후보자확정공고)

- ① 입후보자가 2인 이상으로서 기호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.
-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기호가 배정된 경우에는 후보자확정 및 기호배정사실을 협회홈 페이지 등에 공고한다.

제4장 선거관리 및 투·개표

제12조(선거 운동)

- ① 후보자는 자신의 능력, 자질 및 공약사항 등을 회원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, 이 규정과 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.
- ②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확정공고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 24:00까지로 한다. 다만, 선거일인 총회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 후보자의 연설에 한하여 허용한다.
- ③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협회원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하여 해당 후보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총회일 전에도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, 각 후보자간의 발표시간은 해당 후보자간 의 합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
- ④ 후보자는 협회원에게 금전·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,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- ⑤ 후보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⑥ 혼탁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

장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, 그 위반사실을 발표할 수 있다.

제13조(선출 방법)

- ①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원이사가 지정하는 자를 이사회 의결로 선출한다.
- ② 임원은 총회에서 협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협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 다만,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한 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,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수로 선출할 수 있다.
- ③ 서면(결의)투표의 경우 제2차, 제3차 투표 시에도 동일한 후보자에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며, 2 차 투표에 오르지 못한 자에게 투표한 경우에는 기권표로 간주한다.

제14조(투표 방법)

- ① 투표는 직접참석투표 및 서면(결의)투표의 방법으로 하고, 관계법령 및 협회정관에 따른다.
- ② 직접참석투표는 총회 당일 총회장에 협회원이 직접 참석하여야 하는 투표로서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되, 경합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- ③ 서면(결의)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서면(결의)투표지를 작성하여 총회 전일까지 선거 관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제 출하는 방식에 의한 투표를 말한다.
- ④ 제3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된 서면(결의)투표지는 무효로 한다.
- ⑤ 제출된 서면(결의)투표지는 개표 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 보관한다.
- 제15조(투·개표 참관) 투표·개표 시 필요한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의 참 관을 허용할 수 있으며, 투·개표 참관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
- 제16조(무효투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.
 - 1.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
 - 2. 기표가 안 된 경우
 - 3. 중복으로 표기한 경우
 - 4. 기표 란을 벗어나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 할 수 없는 경우
 - 5. 기타 의사표시가 불분명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처리한 경우

제17조(개표 및 당선공고)

- ① 투표가 완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하게 개표하여야 한다.
- ② 개표결과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및 당선자를 즉시 공표한다.

제18조(후보등록 취소)

-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중대 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 - 1. 선거운동 과정에서 회원 등에게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 - 2. 후보등록 요건이나 기재사실 등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

- 3. 허위사실로서 특정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중상하는 행위
- 4.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
- 5. 후보자 서약서의 서약내용을 위반하는 행위
- 6.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경우
- 7. 협회정관에서 정한 선출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
-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의결을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-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의거 등록이 취소된 자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통지하여 야 한다.

제5장 보칙

제19조(창립총회에서의 선거 및 임원의 임기)

- ① 총회에서 확정된 규약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이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.
- ② 총회시의 선거관리위원은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, 발기인 등이 협회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. 단, 선거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지원을 위해 협회 사무국에서 1인이 선거관리위 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.

제20조(투표지 보관)

- ① 선거가 끝난 후의 투표지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봉인, 날인하여 협회에서 보관한다.
- ② 투표지의 보관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.
- 제21조(유권해석 등)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협회 선거관리위 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한다.
- 제22조(법령의 변경)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.

부칙

제1조[시행일] 이 규정은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 총회 등에서 의결한 날(2020년 12월01일)부터 시행한다.